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조림사업 허가 절차에 관한 고찰

방홍석¹ · 권형근¹ · 최성민¹ · 이준우^{2*} · 공영호³

¹충남대학교 대학원, ²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³녹색사업단

A study on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Laos

Hong-Seok Bang¹, Hyeong-Keun Kweon¹, Sung-Min Choi¹, Joon-Woo Lee^{2*}, Young-Ho Kong³

¹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²Dept. of Environment and Forest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³Korea Green Promotion Agency, Daejeon 302-121, Korea

Received on 8 February 2012, revised on 20 February 2012, accepted on 23 March 2012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nged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basic understanding of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in Lao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Laos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2004,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was legislated. In 2009,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omestic Investment Promotion Ac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were enacted. In Laos, the country's land is owned by the nation's community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land, land can be conceded or leased. The ways to invest are joint ventures (where at least 10%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has to be made), foreign sole investment (where the investor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100,000 or more), joint venture agreement and etc. Lastly, the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ite selection, business investments feasibility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forestry permit application.

Key words : Laos,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

I. 서론

우리나라는 산림면적이 전체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주요 목재 수입국가이다(KFS, 2010). 이는 일제의 산림 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고갈되었고, 그로 인한 산림의 복구가 수십 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조림목의 영급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KFS, 2011).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목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목재의 초과 수요가 발생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목재의 초과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KFS, 2011).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해외산림자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외조림사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지의 투자환경 및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Yeom 등, 2011).

한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 주요 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베트남, 태국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낙후되고 저개발 되어 있으나, 높은 성장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 국가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MGL, 2010).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5736

E-mail address: choi1324@cnu.ac.kr

특히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내륙국가로서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나, 주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생태학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산림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KGPA, 2010). 또한, 라오스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및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라오스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과 변경된 허가절차를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해외조립사업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라오스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과 제도적 절차를 조사하였으며, 라오스 현지 실무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조립사업 허가절차에 대해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개요

라오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E.R.K., 2011). 또한 2004년 11월에는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7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이에 따른 시행령이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통합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투자형태, 투자자의 보호, 투자자의 권익보장, 투자절차, 투자인센티브, 관세 및 법인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절차를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하게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일창구서비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절차와 방법을

Table 1. Comparison of 「Law on the Promotion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구분	외국인투자촉진관리법 (199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년)
투자형태	1) 1인 또는 2인 이상 라오스 투자자와 합작사업 2) 100% 외자기업	1) 1인 또는 2인 이상 라오스 투자자와 합작사업 2) 100% 외자기업 3) 경영협력계약
간접비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설비, 생산 수단, 예비부품, 기타 자재의 수입은 일률적으로 수입가격의 1%의 관세 부과	프로젝트 관련 설비, 생산수단, 예비부품, 기타 자재의 경우 면세 1)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면세 적용. 2) 투자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수입 가격의 1%의 관세가 부과.
직접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수송수단에는 일률적으로 수입 가격의 1%의 관세 부과	3)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들 수송수단은 일시적으로 수입품으로 간주됨. 4) 수송수단의 수는 투자자본의 규모, 지역, 활동에 따라 결정
법인세	법인 소득세는 일률적으로 20%의 관세 부과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부여
고용규정	외국인 숙련공 및 외국인 기술자 고용가능	외국인 노동자 고용가능 (단, 전체 고용인원의 10% 이내)

Table 2. Contents of licensing process for foreign investment law.

법률	내용(인허가 관련)
외국인 투자촉진법	① 기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허가증
	② 상공부의 기업등록증
	③ 재무부의 세무등록증
	④ 라오스 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⑤ 공안부의 법인인감
통합투자 촉진법	① 일반투자 - 기업등록증(내국인과 동일)
	② 양여계약 - 양여권증명서
	③ 원조사업분야 - 기획투자부의 승인

Table 3. Tax incentive at investment promotion zone.

제1구역	인프라가 미정비된 원격지 (7년간 면세, 이후 10%의 세율)
제2구역	인프라가 일부 정비된 지역 (5년간 면세, 3년간 7.5% 이후 15%의 세율)
제3구역	지방도시, 시군구, 특별구 (2년간 면세 2년간 10%, 이후 20%의 세율)

완화하였다. 따라서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하게 기업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되고, 별도의 외국인투자허가증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일반 사업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기간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다만 일반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총 자본금이 최소 100,000,000 KIP(한화 약 1천4백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여건에 따라 투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법인세 혜택을 차등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구역에 대한 투자는 7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그 이후부터는 10%씩 세금이 부과된다. 제2구역에 대한 투자는 5년간 세금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부터 15%씩 세금이 부과된다. 제3구역에 대한 투자는 2년간 세금 면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부터 20%씩 세금이 부과된다.

3. 라오스의 조림지 토지확보방안

(1) 토지소유권

라오스 헌법상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지만, 장기간의

Table 4. Land registration procedure in Laos.

1단계	- 토지등기를 위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토지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
2단계	- 토지관리부의 검토
	- 토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
3단계	- 토지의 측정 및 필지도를 작성
	- 중앙토지관리부에 토지등기를 위해 송부
4단계	- 토지사용권 보유자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보증서를 취득
5단계	- 토지사용권 거래사항을 관할 마을이장에게 통지
	- 토지등기부 기록을 변경
	- 비용 지불(신청비, 인지세, 양도세 및 등록비)
	- 토지등기부 기록(일련번호를 사용하여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 등과 지번, 지도, 종류, 위치, 면적 및 경계선,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및 일련번호 등)
6단계	- 토지등기권리증 발급
	- 관할 토지관리부에 신문 등을 이용하여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통지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분배, 이전, 임대, 등기는 국가토지관리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2) 토지 등기절차

토지사용권을 인증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토지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가 증명되고, 토지 등기인의 성명, 토지의 종류, 위치, 면적 등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

(3) 토지 양여 및 임대와 관련한 외국인의 권한

토지를 양여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고, 정부의 재량 하에 개별적으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특정/특별 경제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75년까지 가능하며 개별적 검토 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전대 받을 경우에는 토지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10,000 ha가 넘는 면적의 토지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대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토지관리부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라오스의 투자형태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라오스 내의 모든 투자자들은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라오스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1) 합작투자

라오스 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으로서 라오스 현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라오스의 내국인 투자자 또는 공공기관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자가 최소 10%의 총 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다. 또한 합작사업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라오스에서 사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합작사업계약을 통한 투자방법은 면세 및 감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허권이 필요한 사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외국인단독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인 소유의 기업 또는 법인은 최소 US\$100,000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100,000,000 KIP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

(3) 합작사업계약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라오스 현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합작계약서는 법무부 공증부서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라오스의 조림사업 허가절차

(1) 대상지 선정

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사업)을 위한 대단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은 농림부(MAF) 또는 토지관리청 등과 같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토지 피복도를 근거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여 주요 투자지가 될 무렵목지는 주로 라오스 중부 및 북부지방에 있다.

(2) 사업투자 타당성조사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후 투자자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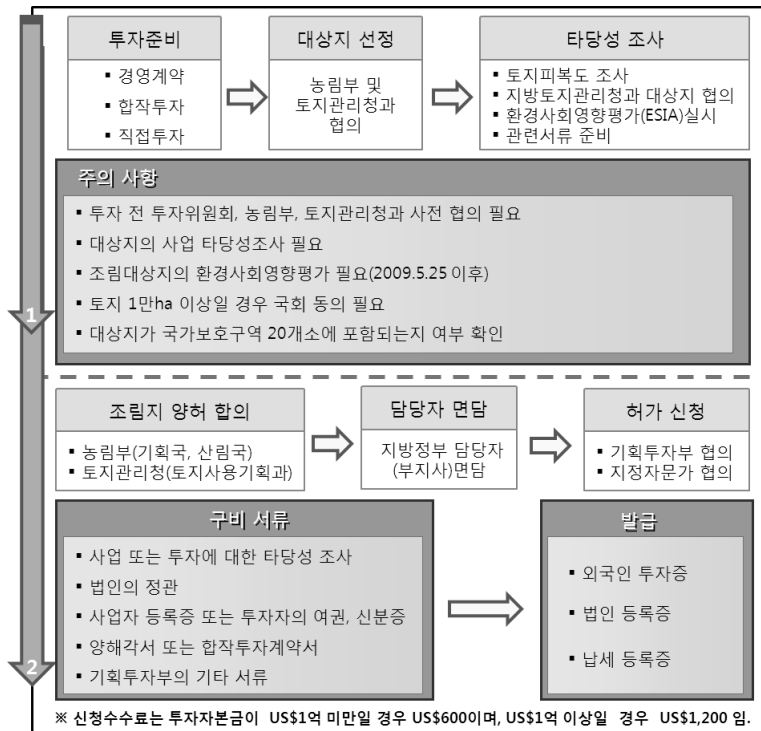


Fig. 1.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Laos.

(3) 환경사회영향 평가

토지 임차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의 토지관리청을 통해 토지임차에 대한 신청에 앞서 기획투자위원회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투자허가서와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련당국의 인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농림부, 토지관리청 등의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4) 조림허가 신청

라오스의 조림허가 신청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사회영향평가, 투자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허가를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계획 및 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이며,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 또는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법인의 정관, 사회환경영향평가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투자자의 신분증, 여권, 합작투자계약서, 해당지역 도면 등이다.

IV. 결론

라오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저개발 되어 있으나,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및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기획투자부의 외국인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여건에 따라 투자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법인세 혜택을 차등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장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소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등기절차에 따라 토지를 임대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으며, 임대 및 양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이나 특별/특정 경제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75년까지 가능하다.

라오스의 투자방법에는 합작투자, 외국인단독투자, 합

작사업계약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합작투자방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총 자본금의 최소 10%를 투자해야 하며, 등록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다. 또한 외국인단독투자방법은 외국인 소유의 기업 또는 법인에서 최소 US\$100,000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100,000,000 KIP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다.

라오스의 조림사업 허가 절차는 대상지 선정, 사업투자 타당성조사, 환경사회영향평가, 조림허가 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투자절차상의 주의사항에는 투자 전 투자위원회, 농림부, 토지관리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토지 1만 ha 이상일 경우 국회 동의를 필요하며 대상지가 국가보호구역 20개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림지 양허합의와 담당자 면담을 한 후 허가를 신청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조림 적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산림청의 '국내의 해외임업 진출 기업/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과제번호; S211011L010310)연구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참고 문헌

- ERK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1. *Investment Law Guide in Laos*. [in Korean]
- KFS (Korea Forest Service).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Forestry*. [in Korean]
- KFS (Korea Forest Service). 2011. *Korean Peninsula Forest Rehabilitation and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in Korean]
- KGPA (Korea Green Promotion Agency). 2010. *Forest Investment Guide for Laos*. [in Korean]
- MG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 *A Study of Laos and Cambodi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in Korean]
- Yeom IH, Kweon HK, Lee JW, Kim SB, Park GS, Han MS. 2011. The forestry-related legal system and permission procedure of forestation business in Indonesia.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38(3): 421-427. [in Korean]